

제296회 정례회
2010. 12. 14(화)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 12. 14(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2일
- 다. 회부일자 : 2010년 11월 19일
- 라. 상정일자 : 2010년 12월 6일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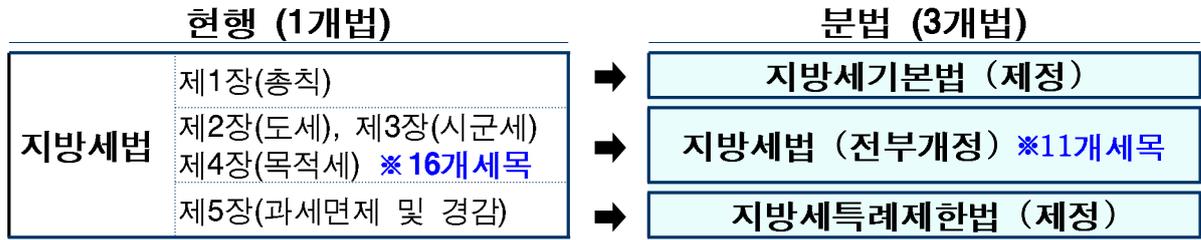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윤영현)

가.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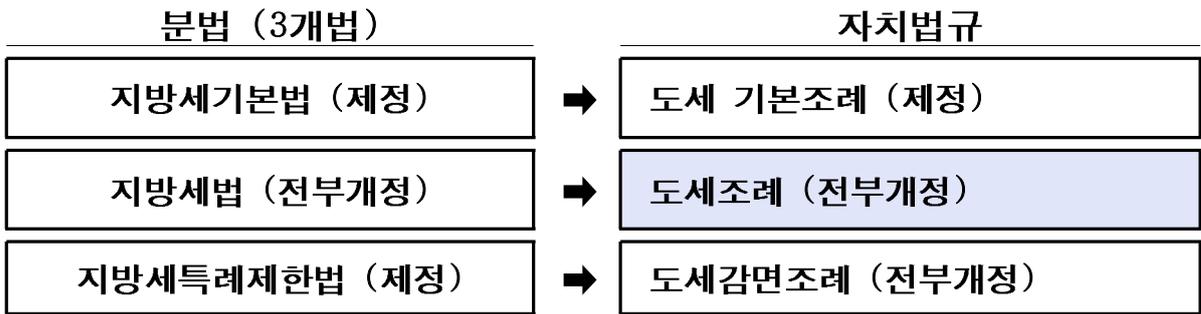
- 복잡한 지방세 세목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한 현행 「지방세법」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전면 개정한 「지방세법」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도세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 금번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따름.

■ 지방세법 분법 내용



■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자치법규 구성



나. 주요내용

-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규정 (안 제3조)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및 납기 규정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매년 갱신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기는 1. 15~1. 31까지임
-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납기 및 부과대상지역 등 규정 (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기간은 사용월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함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장용대)

이번에 전부개정하는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는

- 납세자가 전국 어느에서나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 또는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항 및 제2항)
- 신고받은 관련 서류를 3일 이내에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송부토록 함(제3항)

○ 안 제4조에서는

-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식 취득 사항 확인이 가능한 관련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함

○ 안 제5조에서는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함

○ 안 제6조에서는

-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를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함

○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납기를 사용월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고, 부과대상 지역은 도내 전지역으로 함

○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납기를 사용월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되,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으로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과대상 지역은 도내 전 지역으로 함

○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납기를 채광한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고, 부과대상 지역은 도내 전지역으로 함

○ 안 제15조부터 제18조에서는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명시하고,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토록 하였으며, 부과대상 지역은 도내 전지역으로 함.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세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원활한 도세 부과징수를 위해 전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도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3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시장·

군수는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제2장 취득세

제4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사항이 확인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목록
5. 과세표준과 그 산정근거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3장 등록면허세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 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7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부과대상지역)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한다.

제2절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9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하여 채수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구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 해 1월 16일부터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③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분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지하수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지하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채수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부과대상지역)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한다.

제3절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12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과세표준이 되는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 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부과대상지역)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한다.

제4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15조(세율) 법 제146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분의 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천400원 + 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천900원 + 1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만3천700원 + 2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만4천100원 + 3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만9천100원 +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

제16조(부과·징수)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며,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 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8조(부과대상지역)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매입기준란 중 “등록세과표”를 각각 “취득세과표”로 한다.

별표 2의 2. 사업·행위의 면제대상 및 내용란 중 자목과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의 개조·수선 및 대체취득시의 등록, 허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한함)

차.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교환자동차의 신규등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한함)

②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충청북도세조례”를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공동시설세”를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④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을”을 “취득세, 재산세를”로 한다.

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을 “취득세를”로 한다.

⑥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른”으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구분	인구 50만 이상의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45,000원	30,000원	18,000원
제2종	36,000원	22,500원	12,000원
제3종	27,000원	15,000원	8,000원
제4종	18,000원	10,000원	6,000원
제5종	12,000원	5,000원	3,000원

②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시의 동(洞)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한다)은 시로 보고, 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200원
 -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00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컨테이너 :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5.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총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5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3,0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7,2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7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6,3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9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8,0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1
6,400만원 초과	55,5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3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총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제147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목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

당하는 금액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 ③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 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